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24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기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시 해촉(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안 제7조)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전문가, 관계인, 관계기관, 단체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안 제8조)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함(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7.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2년(二年)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公僕員)의 임기(任期)는 그 직위(職位)에 재직(在職)하는 기간(期間)으로 한다.
② 보궐(補選)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그 전임(前任)자의 잔여(殘餘)기간(期間)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都知事)는 위촉(委任) 위원(委員)중에 다음 각호(各號)의 어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때에는 임기(任期)중이라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利事業法) 제7조제3항(第7條第3項)의 각호(各號)의 어느 하나(하나)에 해당(對應)되어 위원(委員)의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하는데 부적당(不適當)하다고 인정(認定)될 때
2. 장기(長期)치료를 요(要)하는 질병(疾病), 기타(其他) 사유(事由)로 위원(委員)으로서의 활동(活動)이 어려운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委員長)은 위원회(委員會)를 대표(代表)하며, 위원회(委員會)의 회무(會務)를 통할(統轄)한다.
② 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장(委員長)을 보좌(輔佐)하며, 위원장(委員長)이 부득이(不得已)한 사유(事由)로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辦)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委員長)은 위원회(委員會)의 회의(會議)를 소집(召集)한다.
② 위원회(委員會)의 회의(會議)는 정기회(定期會)와 임시회(臨時會)로 구분(區分)한다.
③ 정기회(定期會)는 연 1회(一回)이상 개최(개최)하며 임시회(臨時會)는 위원장(委員長)이 필요(需要)하다고 인정(認定)되거나 재적(在籍)의원(議員) 3분의 1(三分之一)이상의 소집(召集)요구(要求)가 있을 때 개최(개최)한다.
④ 위원장(委員長)이 회의를 소집(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會議) 개최(개최)일 7일(七日) 전에 회의(會議) 일시(日時)·장소(場所) 및 심의(審議)안건(案件)을 위원(委員)에게 통지(通知) 및 송부(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緊急)을 요(要)하거나 기타(其他) 부득이(不得已)하다고 인정(認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委員會)는 재적(在籍)위원(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과 출석(出席)위원(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委員會)는 심의(審議)·건의(建意) 및 의결(議決)사항(事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場合)에는 전문가(專門家) 또는 관계인(關係人)을 출석(出席)하도록 하여 의견(意見)을 듣거나 관계기관(關係機關) 및 단체(團體) 등에 자료제출(資料 제출)을 요청(要求)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 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제7조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 지원법에 규정한 단체)에서 추천한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법 제14조)에서 추천한자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여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받은 시·군·구 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에의 평가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지역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